

영등포구의회  
제13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2007. 9. 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2007. 8. 29.
- 제 안 자 : 영등포구청장

## 제정(제안) 이유

- 청소년기본법 및 기타 청소년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육성 기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복지  
향상, 청소년시설관리, 청소년보호, 청소년국제교류 및 문화  
활동 증진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구청장은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제4조·제6조)
-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안제7조)
-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는 자로 함(안제8조)
-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를 위하여 구·동에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안제19조 부터 제25조)
- 구청장은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안제26조 부터 제31조)
- 구청장은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음(안제32조 부터 제36조)
- 구청장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하여야 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함(안제37조 부터 제45조)
- 구청장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안제46조 부터 제52조)

## 관련법규

- 청소년기본법·같은법시행령·같은법시행규칙
- 청소년보호법·같은법시행령·같은법시행규칙
- 청소년활동진흥법·같은법시행령·같은법시행규칙

##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 강동구, 관악구, 금천구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기타 청소년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복지향상, 청소년보호, 청소년시설관리운영, 청소년국제교류 및 문화활동증진 등 청소년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4조 및 제6조에는**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복지의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 **안 제7조 부터 제18조까지는** 청소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며, 기능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기관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청소년 활동과 복지향상 등 지원이며
- **안 제19조 부터 제25조까지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을 위하여 동별 15명 이내의 지도위원을 위촉하고 구·동에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 **안 제26조 부터 제31조까지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 **안 제32조 부터 제36조까지는** 청소년교류 및 문화활동 지원근거 규정으로 구청장은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37조 부터 제45조까지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하여야 하고 구역을 표시하여 운영하며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46조 부터 제52조까지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별표2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검토결과 관계법규에 적합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은 9세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현재 우리구의 청소년 인구수는 2007년6월 현재 77,748명으로 남자 40,534명, 여자 37,214명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와 관련 본 조례 제정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는 각각 폐지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 9. 5.

보고자 : 이 남 식